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9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홍배・이기헌

송옥주 · 김정호 · 이연희

조 국 · 최기상 · 민형배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,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 3조의2 신설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(안 제4조제2항 신 설).
- 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의2 신설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 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(안 제15조).
- 마.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(안 제15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 성화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
 - 4.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지역사랑상품권을"을 "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"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가맹점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할인율은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되,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1항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

- 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의2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종합계획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현 행	개 정 안
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・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.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4.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	제3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관한 사항 2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유통 및 이용실태에관한사항 3.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유통 및 이용실태에관한사항 3.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해 사항 4.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발행 폐지의 신고)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 사랑상품권의 종류 · 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3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 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 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
제5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제5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) ① ----------제4조제2항에 따 른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가맹점에 대한 지원)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
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
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
<u>할 수 있다.</u>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
하여야 한다.
②
<u>이 경우 할인율은 1</u>
00분의 15 이상으로 하되, 인구
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
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
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하여
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
신청할 수 있다.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

<신 설>

<신 설>

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 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<u>할</u> 수 있다.

② (생략)

<u>정법」</u>	제313	조에	따라	예선	<u> </u>
	- 기획계				
출하는	: 경우	제4형	항에	따른	각
<u>지방지</u>	-치단체	의 지	H정지	원 ረ	신청
을 반역	영하여이	ㅑ 한¹	다.		
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 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 권 발행・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